

## ★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과 정부 형태 변화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첫선을 보인 제헌 헌법에서부터 오늘날의 9차 개헌 헌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과 갈등의 역사를 담고 있다.

### - 대한민국 헌법 변천의 과정

1910. 8. 29 (경술국치) - 1945. 8. 15. (광복, 독립) : 35년 간의 일제식민지

1945. 8. 15 : 광복

1945. 8. 15 ~ 1948. 8. 15 : 미군정기

1948. 5. 10 : 5·10 총선거 (제헌선거)

1948. 7. 17 : 헌법공포 (제헌절)

1948. 8. 15 : 초대 대통령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 대한민국 정부 탄생

제헌 헌법 (1948.7.17)	의원 내각제를 기초로 헌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로 급하게 다시 만들어졌다. 내각 책임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 도입되었다.
1차 개헌 (발췌 개헌, 1952.7.7)	야당의 의원 내각제 개헌안과 여당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중심으로 발췌 통합하여 통과시켰다. 야당을 탄압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연장을 목표로 한 개헌이었다.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1954.11.29)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중임까지만 허용한 조항을 초대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헌안이 처음에는 부결되었으나 사사오입의 논리를 적용해 다시 가결·선포되었다.
3차 개헌 (1960.6.15)	4·19 혁명 직후 이루어진 개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의원 내각제 개헌이다. 대통령 국회 간선제 방식이 재도입되었다.
4차 개헌 (1960.11.29)	3·15 부정 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소급 입법의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개헌이다.
5차 개헌 (1962.12.26)	1961년 5·16 군사정변에 따라 이루어진 개헌으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의결로 국민 투표를 실시해 개정하였다. 대통령 직선제로 변경되었다.
6차 개헌 (1969.10.21)	중임(重任)만 허용하고 있는 헌법을 폐지하고 대통령 3선 연임을 가능케 한 개헌이다. 대통령 직선제는 유지되었다.
7차 개헌 (유신 개헌, 1972.12.17)	10월 유신으로 이루어진 개헌이다.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상태에서 비상 국무 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대통령 간선제, 임기 6년, 연임 제한을 없애고, 실정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였다.
8차 개헌 (1980.10.27)	12·12 쿠데타, 5·17 쿠데타와 이에 저항한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 세력에 의한 개헌으로 대통령 간선제, 임기 7년의 단임제를 주 내용으로 한다.
9차 개헌 (1987.10.29)	6월 민주 항쟁의 요구를 당시 집권 세력이 수용하면서 이루어진 개헌이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는데, 기본권을 천부 인권으로 규정하고, 적법 절차의 원리 도입, 국회의 위상 강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폐지,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국정 감사제 및 헌법 재판소 부활 등을 내용으로 한다.